

성남시혁신지원센터

2026년 입주 혁신기관 모집공고

성남하이테크밸리 및 성남시 관내 입주기업들의 혁신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성남시에서 설치하고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혁신지원센터에 입주할 혁신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1 시설개요

- 가.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62번길 33(상대원동) 8층
성남시혁신지원센터(센터M지식산업센터)
- 나. 위탁자: 성남시장
- 다. 수탁자: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라. 시설규모

규모	분양면적	전용면적
지상 8층 전체 (54실)/ 지하 1층 일부 (3실)	총 5,361.45 m ² (1,624평)	총 2,736.78 m ² (829평)

마. 센터 내 주요시설

구분	주요시설
8층	회의실, 교육실, 강당
지하 1층 일부	경영 혁신 지원실
지하 3층 ~ 지상 7층	주차장

바. 금회공급면적 (단위 m²)

구분	호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호실수
지원시설	지상8층 802-1~6호	273.88	262.30	536.18	6실
	803-1~3호	176.13	168.67	344.80	3실

※ 모집유형 : 802, 803호 전체(9실) 혹은 802호(6실), 803호(3실) 단위로 신청가능, 개별호실 지원 불가

2

입주대상

가. 입주자격: 성남하이테크밸리 및 성남시 관내 기업의 혁신 및 첨단산업 성장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아래의 기관·단체 등

- 1)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부설 연구소 및 성남산업진흥원 등
- 2) 기업지원 기관, 관련 협회, 협의회(사단·재단 법인 등) 및 협의체, 산·학·연·관 교류 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등

나.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 및 건축물 구조

구 분	세부기준		비 고
높이(층고)	8층	3.9m	지식산업센터
설계(적재) 하중	용도별	허용하중	건축물 설계기준(하중)을 초과하는 기계장치 설치 기관·단체·기업은 입주 불가 (※1KN= 약 100kg)
	공장(지원)	6.0KN/m ²	
	근린생활시설	5.0KN/m ²	
	주차장	5.0KN/m ² (지하1층만)	
소음, 진동기준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별표5)에 의함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배되는 기계장치 설치 기관·단체·기업은 입주 불가
내진능력	VII-0.1690g		
마감	바닥	비닐계 타일	
	벽체	수성페인트	
	천장	무석면 불연 천정재	
건축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구조		
전력공급	전력공급량	4,500kVA/ 1,000kW(발전기용량)	
전화회선	국선	1,525P	SK브로드밴드만 설치가능(변경 가능)
	내선(사선)	3,050P	
통신공급	통신회선구분	광케이블 및 UTP케이블 인입	

3

입주시기 및 조건

가. 입주시기: 2026년 2월 중(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지정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는 사전 통보함

나.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수탁자의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기간 내에서 하며,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심사 등을 거쳐 결정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름.

다. 입주부담금

1) 입주부담금의 구분: 사용료, 관리비(원상복구 이행보증증권 별도)

2) 사용료(VAT별도): 재산가액 × 사용요율(0.01)

※ 재산가액: 부지가액(공시지가 × 부지 공용면적) + 시가표준액

※ 월 관리비 별도(실비정산)

※ 상기 사용료는 평균단가로 호수(위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면적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는 매년 산출하여 부과함.

※ 세부 호실별 면적 및 사용 허가조건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031-750-2803)로 문의

라. 납부방법 및 시기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사용료	연단위 선납 (3개월 단위 선납 가능)	최초 입주일(열쇠 교부일 포함) ※ 분납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 추가됨
관리비	월 단위 후 납부	최초 입주일 기준 매월 말 고지, 고지 후 1주일 이내 납부

※ 지정계좌는 계약 체결 시 안내 예정

- 1) 다음 년도 1년간 사용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다만, 계약일이 속한 연도의 사용료는 연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사용허가 계약 일에 납부해야 함.
- 2)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3)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징수함.

4

신청방법 및 선정 절차

가. 신청방법

1) 신청서류 교부처 및 제출서류

- 교부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snic.or.kr)
- 사용허가 신청서(직인날인), 공통 및 추가제출 서류 각 1부

서류목록		비 고
공통 서류	· 입주 신청서, 입주 계획서(직인날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책임자의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
추가 서류	· 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설립 근거법령 등 정부, 지자체 출연기관 입증서류)	1부
	· 최근 3년간 정부출연 혹은 투자금 수행실적	1부

※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통 · 추가서류(해당 기관 · 단체 · 기업에 한함) 일체
에 직인 날인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후 사용허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로 갈음.

2) 제출기간: 2026. 01. 12.(월) ~ 2026. 1. 30.(금) 17시까지

3) 제출방법: 기업혁신본부(yw2nd@naver.com)로 이메일 제출

4) 제출 및 신청 관련 문의: 기업혁신본부 031-750-2803

나. 선정 절차

1) 기간별 선정 과정

구 분	기간	비 고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2026년 01월 12일(월) ~ 2026년 1월 30일(금)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시 홈페이지



심의위원회 서류심사	2026년 1월 30일 ~ 2월 6일 예정	수탁기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	----------------------------	--------------------



심의위원회 대면심사	2026년 2월 13일 예정	성남시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	--------------------



적격기관 발표	2026년 2월 중 예정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시 홈페이지
---------	---------------	-------------------------

2) 입주대상기업 선정 방법

구 분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 점	비 고
계			100	
서류 심사	기관현황 (10점)	정부, 지자체 출연기관, 공립연구기관, 정부소관 비영리법인(설립근거 법령 참조)	5	정량 평가 (수탁 기관)
		기관 운영기간(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확인) (10년 이상(5) / 7년 이상(4) / 5년 이상(3) / 5년 미만(2))	5	
	상주인력 (10점)	책임자의 해당분야 경력 및 사업분야 전문성 (10년 이상(5) / 5년 이상(4) / 3년 이상(3) / 3년 미만(2))	5	
		상주 구성원 확보 여부 (4명 이상(5) / 2~3명(4) / 1명(3) / 확보 전(2))	5	
	기관 안정성 (10점)	1년 운영예산(정부출연 혹은 투자금) (10억원 이상(6) / 5억원 이상(5) / 3억원 이상(4) / 5천만원 이상(3) / 5천만원 미만(2))	6	
		정부 및 지자체 과제 수행이력(전년도 기준) (3건 이상(4) / 2건 이상(3) / 1건 이상(2) / 없음(1))	4	
	사업내용의 적합성 (25점)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향후 1년간 세부 일정별 계획, 소요 자금 파악 여부 등)	15	
		공간 사용계획의 효율성	10	
	하이테크 밸리에 대한 이해(5점)	잠재고객 기업(산업) 및 산단 특성 파악의 구체성 (전체 규모 파악, 목표 시장 파악 등)	5	정성 평가 (평가 위원)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 (15점)	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5	
대면 심사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25점)	입주 예정인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 기획	10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및 기업네트워크 연계 방안 의 실효성	15	

다. 입주기관 선정 및 발표, 계약 체결 사항

1) 서류 및 적격심사

- 가) 서류(정량)심사: 입주자격, 구비서류 등 기본 심사
나) 적격(정성)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중빙서류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
※ 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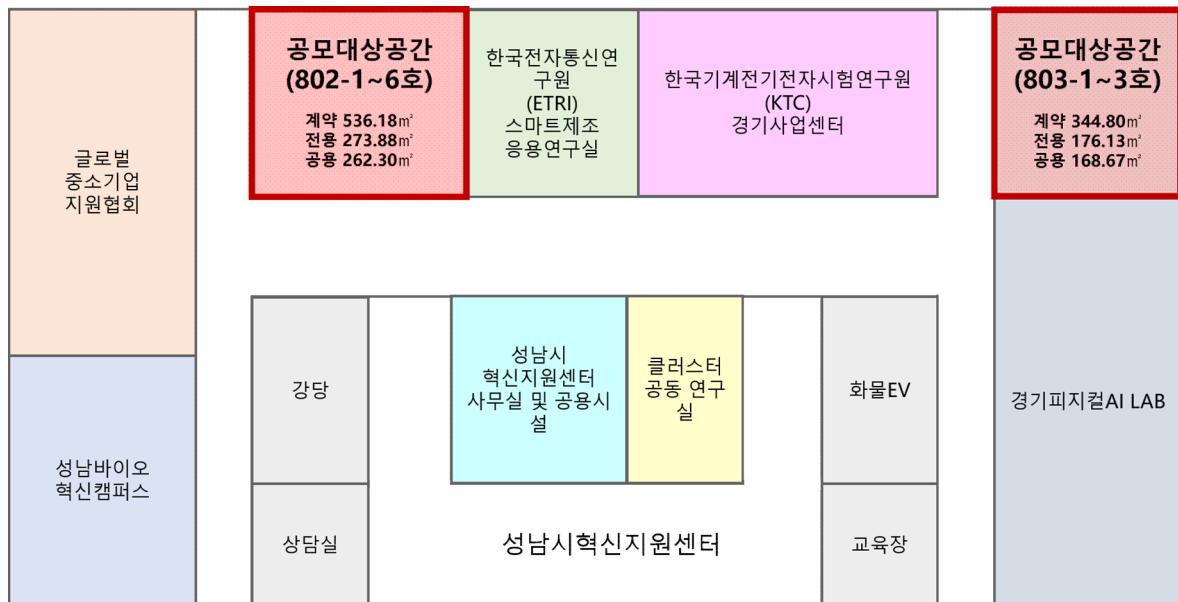
2) 선정결과 발표

- 가) 적격심사 통과기관 발표 및 제출서류(원본) 제출기한 공지
나) 적격기관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snic.or.kr)를 통해 게시될 예정임.

3) 입주계약 체결

- 가) 입주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영업일 7일 이내에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참고] 입주시설 공간 배치도



[참고] 입주기관의 의무 및 사용허가의 취소

- | | |
|--|--|
| <input type="checkbox"/> 입주기관의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관은 성남하이테크밸리 및 성남시 관내 입주기업의 혁신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화업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기업과 후진기업 간의 매칭, 협력프로그램 개발 등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한다. |
| <input type="checkbox"/> 입주기관의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관은 혁신지원센터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받은 사용 또는 수의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사용허가 받은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개축·증축 기타 건물의 원상변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
| <input type="checkbox"/> 원상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관은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 없이 위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위탁자에게 변상하거나 입주기관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 <input type="checkbox"/> 사용허가 취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자는 입주기관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협의회를 거쳐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허가 개시일 후 2개월 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단,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그 사업을 휴지 한 때- 사용료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료 납부기한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연체하였을 때(연 사용료를 분납하는 경우에 한함.)- 입주기관이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기 「입주기관의 의무」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하기전 60일 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관이 해명하고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입주기관은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입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3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용허가의 취소 가능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거나, 임차인의 재산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의 신청을 받아 사실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경우○ 각종 적정 설계기준(소음, 진동, 하중 등)을 초과하여 기계 및 장비를 반입·설치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대하여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공용시설 및 면적을 부당하게 점거하여 사용한 경우○ 허가받은 사용 또는 수의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제출서류의 허위 제출 등 입주자격이 없음이 판명될 경우○ 기타 관리기구가 정하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 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때 |